

#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정우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5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29.  
발의자 : 정우택 · 김영식 · 박정하  
양향자 · 윤상현 · 최춘식  
노용호 · 박대수 · 황보승희  
홍문표 · 김성원 · 이명수  
유경준 · 김용판 · 성일종  
서일준 · 박성민 의원  
(17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철도산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투자확대와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·고성장 산업이나, 국내 철도산업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부재 및 수출역량 부족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임.

그런데,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는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편중되어 있어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

을 추가하여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8호 신설).

##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철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호(종전의 제8호) 중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(종전의 제9호) 중 “제8호”를 “제9호”로 한다.

8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. 다만,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한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~ 7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7조(사업)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. 다만,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산업 단지로 한정한다.
8. 제1호부터 <u>제7호까지</u> 의 사업 에 딸린 사업	9. ----- <u>제8호</u> ----- -----
9. 제1호부터 <u>제8호까지</u> 의 사업 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, 공급 및 관리	10. ----- <u>제9호</u> ----- -----